

<희사랑 산후조리원 이용 약관>

본 약관은 희사랑 산후조리원이 제공하는 시설이용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1조 계약 및 예약 조건

제1항 본 원은 희사랑 병원에서 출산하신 산모님만을 대상으로 합니다.

제2항 이용계약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입실 신청서 작성함으로써 예약으로 간주합니다.

제2조 계약금과 총 이용금액의 지급

제1항 본 원은 계약금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.

제2항 계약서에 기재된 총 이용금액은 산모와 입생 여 각 1인이 함께 입실할 요금을 원칙으로 합니다.

제3항 입실료는 본원이 정한 요금체계에 의해 산모가 선택합니다

제4항 이용료는 입소시 입생을 원칙으로 합니다.

제5항 쌍둥이 입소시 추가 입생 여 1인당 1주(18만원) 추가 됩니다.

제3조 입실 서비스

제1항 사용객실은 산모 1인 1실을 원칙으로 합니다.

제2항 본 원에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※산모과거리 부문

1)식단:1일 6끼(3식3간식)가 각자 방에 room service로 제공됩니다.

2)프로그램:산모의 건강회복 증진을 위해 산후요가,좌욕,피부마사지 및 경혈,배팩,펠트공예,땃솔도장(입각비별도),사진촬영을 하며 도화 기타 기계치료 장비론 제공됩니다.

※입생과거리 부문

1)목욕,기저귀,수유등 입생 여 관련 total service

2)분유(매일분유),기저귀,젖병의 특별무상 서비스 제공

※청소,세탁,소독방제 서비스 제공

※산후조리와 육아정보를 제공

제4조 이용계약의 변경 및 조정

제1항 이용기간은 2주(13박14일)를 기본으로 하며,사업자와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 다만,2주보다 단기 이용 요청 시 가능합니다.

제2항 입실시간은 오후 2:00시 이내,퇴실시간은 오전 11:00시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.

제3항 예정대로 입실치 못할 시는 사전 연락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제5조 출산 예정일의 변동

제1항 출산 예정일과 다른 일자에 출산하여 원내 사용 가능할 입원실이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

제2항 출산의 특징상 예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기 때문에 입원실의 수급이 원활치 않을수 있으므로 이때는 희사랑 병원의 입원실(1인실기준병실료:9만원)을 대체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제3항 산후조리원 이용금액보다 대체 이용할 입원실의 이용금액이 낮은 때에는 이용자에게 그 차액을 환급 합니다.

제6조 입실 전 계약의 해제

이용자는 입실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

제7조 입실 후 계약의 해지

이용금 환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(080229) 13호에 따릅니다.

(사업자에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)

▶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 하는 요금을 공제 하 잔액을 환급 하고 총 이용금액의 10% 배 상 (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함, 경우)

▶총 이용금액에서 (이용기간에 해당 하는 요금+ 총 이용금액의 10%)공제 하 잔액을 환급

제8조 사업자의 의무

제1항 본원은 산모와 심생 여의 건강 상태를 기록 하고 과 리 하는 건강기록부와 사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 진단서, 감염 예방 등에 관 하 교육 수수료등을 갖추었으며, 감염 이나 질병 예방을 위해 소독 등 필요 하 조치를 합니다.

제2항 산모 나 심생 여는 입원 기간 도 안 조금이라도 건강 상의 이상 징후가 보일 때에는 산모 또는 보호자 도의 병에 즉시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 리 하며, 진료 결과에 따라 퇴실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

제3항 화재, 누전 등의 안전 사고로 인함 인적 피해가 발생 하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 하는 등의 필요 하 조치를 합니다.

제4항 본원은 약 하 서비스 외 추가비용이 발생 하 서비스를 강제 하지 아니 합니다.

제5항 본원은 이용자의 승낙 없이 일체의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 하지 아니 합니다.

제9조 손해 배 상

-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산모 또는 심생 여에게 손해가 발생 하 경우 사업자는 그 손 해를 배 상 하여야 합니다.

제10조 물건의 보 관 및 시설물의 이용

-귀중품 및 금전과 리는 산모 또는 보호자가 하며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산모 또는 보호자에게 있 으며, 화폐 나 묘가물에 대 하여 이용자가 본원에 임치 하지 아니 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 함 손해 배 상을 책임지지 아니 합니다.

-입실 기간 중 산모 또는 보호자가 본원의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, 훼손 하 때에는 배 상 책임이 있습니다.

제11조 면책

-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손해가 발생 하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 하 책임을 지지 아니 합 니다.

※이용시 유의할 점※

제1항 산모 나 심생 여는 입원 시 감염의 우려가 있는 전염성 질환(풍진, 성병, B형간염)이나 특이체질, 건강 상 상태를 반드시 알릴 의무가 있으며, 이를 알리지 않 으 문제가 발생 시에는 산모 또는 보호자가 책 임을 지 내 본원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
제2항 본원을 이용 하는 보호자, 면회객은 다 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.

(1) 감기, 설사, 눈병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입실을 불가 합니다.

(2) 주, 흡연을 금 합니다. 음

(3) 모든 방문객은 조 리원 입구에 설치된 세면대와 손소독기를 사용 하여 항상 손을 씻고 소독을 받드 시 해 주십시오.

(4) 조 리원의 위생과 리 상 외부 식은 반입이 금지되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꽃다발 및 화 환 도 하 반입 금지 대상입니다.

(5) 하 거법에 많은 분들의 면회는 제 하 합니다.

(6) 만 6세 미 만의 어린이 도 반을 사절 합니다.

제3항 무단외출, 외박으로 인함 발생 하는 산모의 손해에 대 하 책임은 원칙적으로 산모에게 있습니다.

제4항 명백 하 이유없이 본원에 피해를 주거나 공 도 생활에 누를 끼칠 시에는 본원을 퇴실을 명할 수 있 습니다.

제5항 가족면회는 오후 9:00시까지 가능 하며 필요에 따라 제 하할 수 있습니다.

부 지 본원 규정에 없는 예는 파습에 준 합니다. (상호 협의 하여 결정)